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4. 5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획전략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기획전략과장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및 초저출생 위기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전문화·세분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발맞춰, 공공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 전환과 이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개발·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스마트도시과」를 「디지털정보과」로 명칭 변경하고, (안 제6조)
- 보건소 내 건강증진과의 출산장려 업무 중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법정 업무를 제외한 출산장려 시책업무를 아동가족과로 이관하여 전담팀 신설과 함께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.
(안 제7조의2, 제11조)
- 그리고,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역보건법」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(안 제9조, 제11조, 제18조 및 부칙 제2조)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4년 5월 23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,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24. 5.

제출자: 달서구청장
(기획전략과장)

1. 제안이유

-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“스마트도시과”를 “디지털정보과”로 명칭을 변경하고, 출산장려 업무조정을 통하여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 - 스마트도시과 → 디지털정보과 (디지털 관련 업무 명시화)
- 나. 분장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의2 및 제11조)
 - 아동가족과: 출산장려 (← 건강증진과)
 - 건강증진과: 출산장려 → 모자보건
- 다. 상위법(지방자치법 등) 개정사항 반영(안 제9조, 제11조, 제18조)
- 라.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등 (안 부칙 제2조)

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 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24. 5. 1. ~ 5. 21.)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스마트도시과”를 “디지털정보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스마트도시”를 “디지털 및 스마트도시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여성가족친화·아동친화·출산장려·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조사·결혼장려·보육·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

제9조제1항 중 “제113조,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·제10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7조·제8조”를 “제126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9조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출산장려”를 “모자보건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법 제4조의2”를 “법 제3조 및 제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및 제4항 중 “스마트도시과장”을 각각 “디지털정보과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획경제국)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전략과·<u>스마트도시과</u>·홍보미디어과·일자리지원과 및 경제지원과를 둔다.</p> <p>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스마트도시</u> 조성·정보빅데이터·통계·전산운영·통신·통합관계 등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5. (생 략)</p>	<p>제6조(기획경제국) ① ----- -----<u>디지털정보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디지털 및 스마트도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의2(복지증진국) ① (생 략)</p> <p>② 복지증진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<u>여성친화·가족아동·결혼장려·보육·드림스타트·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 조사</u> 등에 관한 사항</p> <p>4.·5. (생 략)</p>	<p>제7조의2(복지증진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여성가족친화·아동친화·출산장려·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조사·결혼장려·보육·드림스타트</u> 등에 관한 사항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,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·제10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7조·</p>	<p>제9조(설치) ①----- ----- <u>제126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8조</u>-----</p>

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소관사무) ① (생략)

② 보건소장은 「지역보건법」

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 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무를 제외한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(생략)

2. 건강증진·출산장려·건강돌봄·치매관리 등에 관한 사항

③ (생략)

제18조(설치)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운영상의 동(이하 “동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(생략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소관사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「지역보건법」

제11조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모자보건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설치) ① 법 제3조 및 제7조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8. 2. 20., 2024. 3. 29.>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29., 2020. 3. 10., 2024. 1. 16.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